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19	직원	주택마련 해결	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	규정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- 이전기관의 직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기금의 현행 공공임대 주택자금에서 지원 (구체적인 대출한도, 금리, 지원규모는 주택 기금의 지원조건 등에 따라 지원) 		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혁신도시특별법 제45조 2항	06.3.14~07.1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기숙사 건설비용 융자 가능 	
소관부처	국토교통부		08.1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8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이주직원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소요될 자금 수요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※ 자금수요 규모와 시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파악 	
담당부서	주택기금과		09.6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9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이주직원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소요될 자금 수요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※ 자금수요 규모와 시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파악 	
			11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11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"독신자 숙소 등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" 제도 개선 	
			12.9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12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기숙사 건설자금 융자 시행(12.9.3) - 금리 4~5%, 상환조건(3년 거치 17년 상환) - 50㎡/2인1실, ㎡당 80만원 	